

- 소방청 일반직공무원(전산 9급) 경력경쟁채용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일정 등 공고

소방청 일반직공무원(전산 9급) 경력경쟁채용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일정 등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22일

소방청장

1. 서류전형 합격자 (6명)

| 채용분야 | 응시번호 | | |
|--------------------|-------|-------|-------|
| 일반직 공무원 (전산 9급) | 전산-01 | 전산-03 | 전산-05 |
| | 전산-07 | 전산-11 | 전산-19 |

2. 서류전형 합격자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제출 안내

가. 대상/서류 : 서류전형 합격자 6명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1부

나. 기한/방법 : '22. 9. 7.(수) 18:00까지 / 등기우편

다. 제출처 : 소방청 교육훈련담당관(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9, 한림프라자 506호)

※ 등기우편은 접수 마감일까지 우체국에 정상 접수한 것까지 인정하며, 민간 택배 및 퀵서비스 등으로는 접수하지 않음(우체국 택배만 가능)

라. 유의사항

- 1)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제3조1항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소방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는 불인정)
- 2) 공무원 신체검사서의 유효기간은 판정일로부터 1년입니다.
- 3) 공무원 신체검사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거나 신체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은 시험응시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불합격 처리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면접시험

가. 등록일시 : 2022. 8. 29.(월) 13:30 ~ 14:00

나. 등록장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솔동복합커뮤니티센터 정음관 솔마루 3실
(세종 나리로 57-26 한솔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정음관 2F, 203호)

다. 응시대상 : 6명 (서류전형 합격자)

라. 면접방법 : 개별면접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등 질의·응답)

※ 비대면 면접 : 격리 판정 등을 받고 [붙임4] 비대면 면접 시험 응시신청서를 제출한 자

마. 평정요소 :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바. 응시자 준비물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모바일 포함), 주민등록 발급신청 확인서, 기간만료 전 여권만 인정

4. 최종합격자 발표

가. 공고일시 : 2022. 9. 8.(목) 14:00

나. 공고방법 : 소방청·119고시 누리집 게시

【 합격자 결정 등 최종합격 기준 】

(합격자 결정) ① ‘중’, ‘하’의 개수와 관계없이 ‘상’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

②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

(불합격 기준) ① 과반수 위원이 평정 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

② 과반수 위원이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 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

(추가 합격자) 최종합격자가 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면접시험 평정 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 결정 가능

- 붙임 1. 응시자 유의사항 안내
2. 자진신고시스템 운영 등 코로나19 유의사항 안내문
 3. 비대면 면접시험 응시 신청서
 4. 응시원서 기재사항 정정신청서
 5.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6. 신체검사 의료기관 현황 (신체검사 전 유선 확인 必)

붙임 1 응시자 유의사항 안내문

- 본 시험 공고는 시험 운영 여건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119 고시 누리집(<http://119gosi.kr>)에 공고합니다.
- 면접시험 당일 등록시간 안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응시포기로 간주됩니다.
- 시험장 물품의 파손·훼손 등의 경우 응시자 본인이 변상해야 하며, 시험장 전체는 금연구역으로 흡연 적발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시험 중 본인의 소지품은 본인이 관리하여야 하며 소방청에서는 소지품 분실 등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시험장 내에서는 휴대폰 등을 이용하여 면접시험 장면을 촬영할 수 없으며, 면접시험 중 전자·통신장비 소지자(휴대전화, 스마트워치 등)는 부정행위자로 간주됩니다.
- 면접시험 중 운영요원 및 면접위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무단 이석 등으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추가 시험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는 면접시험 자료로 활용됩니다.
- 면접시험의 세부 운영 방법은 시험 당일 응시자에게 사전 교육을 실시하며, 응시자의 부주의로 교육을 받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제한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합격 취소 또는 무효처리 됩니다.

방역당국으로부터 격리통지를 받은 응시자는 **자진신고시스템 안내문에 따라 본인의 응시 예정일 전(前)일 24:00까지 자진신고를 완료**해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1. (신고대상) 면접시험 응시자 중 아래 사항의 하나 이상 해당하는 응시자

- ① 코로나19 확진 또는 자가격리자로 시험(검사)일까지 격리 중인 응시자
- ② 신속항원검사(자가진단키트) 양성이고, 시험일까지 코로나19 PCR 검사(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가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응시자

2. (신청기간) 면접시험일 전(前)일 24:00까지

※ 응시 예정일 전(前)일 24:00까지 응시 신청서가 도착하지 않을 경우 응시 의사가 없다는 것으로 간주하고 비대면 면접시험 응시가 불가합니다.

3. (신청방법)

- ① 소방청 교육훈련담당관 유선통보 (044-205-7287 ~ 7294)
- ② 첨부서류 E-메일 제출 (1830mm72kg@korea.kr)

4. (제출서류)

- ① (공통) 비대면 면접시험 응시 신청서
- ② (병원 입소자) 의사 소견서

5. (시험안내) 비대면 응시 신청자에게 일정 및 면접시험 방법 등 개별 통보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응시자 유의사항 】

- ▶ 응시자는 KF94 성능 이상의 인증된 마스크를 착용하고 시험에 응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응시자는 시험장 출입 전 반드시 소독제로 손을 소독한 후 발열검사를 받아야 하며, 마스크(코와 입 막음)를 계속 착용해야 합니다.
- ▶ 마스크 분실 및 사용 중 훼손 등에 대비하여 마스크 여분 소지를 권장합니다.
- ▶ 기침, 발열 등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반드시 운영요원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시험장 내 다른 응시자와 대화를 자제하여 주시고 다른 응시자와 2m 이상 거리두기를 실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시험 당일 응시자를 제외한 외부인은 시험장 출입을 전면 통제합니다.

코로나19 별도시험 응시 신청서

1. 인적사항

| | | | |
|---------|--|---------|--|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 휴 대 전 화 | | 응 시 번 호 | |
| 현 주소지 | | | |
| 격 리 기 간 | | | |
| 신 청 사 유 | | | |

2. 제출서류

※ 서류 제출현황 (제출 시 에 'V' 체크)

- ① 응시 신청서 (공통)
- ② 의사 소견서 (병원 입소자용)

※ 제출서류는 방역당국 지침 및 시험운영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상기 본인은 비대면 면접시험 응시를 신청합니다.

2022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소방청장 귀하

응시원서 기재사항 정정신청서

1. 접수자 인적사항

| | | | |
|---------|--|---------|--|
| 시 험 명 | | 응 시 계 급 | |
| 성 명 | | 응 시 번 호 | |
| 전 화 번 호 | | 휴 대 전 화 | |

2. 정정 신청 내용

| 구 분 | 정정 전 | 정정 후 |
|-------------|------|------|
| 성 명 | | |
| 주 민 등 록 번 호 | | |
| | | |

3. 정정 사유

4. 첨부: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개명이나 주민등록번호 정정 등 전후 사실이 확인 가능할 것)

2022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소방청장 귀하

붙임 5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1. 1. 5.>

(앞쪽)

신체검사용 채용 신체검사서

※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
|--------|-----------|--------|--------|----------|------------------------------------------|
| ① 구 분 | ② 시험실시 기관 | ③ 응시직명 | ④ 응시번호 | ⑤ 성 명 | 사 진 (3.5cm × 4.5cm) ※ 압인 또는 계인 |
| ⑥ 검사 시 | | | | | |
| ⑦ 재 사용 | | | | ⑧ 주민등록번호 | |

검 사 내 용

| | | | |
|-------------------------|-------------------|--------------|--------|
| 키 | cm | 체 중 | kg |
| 허리둘레 | cm | 혈 압 | |
| (교정)시력 | 좌: () | 색 신 (색 각) | (교정)청력 |
| | 우: () | | |
| 종 양 질 환 | 이 비 인 후 질 환 | | |
| 호 흡 기 질 환 | 심 혈 관 질 환 | | |
| 소 화 기 질 환 (간 질 환 포함) | 신 장 / 비 뇨 기 계 질 환 | | |
| 내 분 비 질 환 | 혈 액 질 환 | | |
| 신 경 질 환 | 피 부 질 환 | | |
| 근 골 격 계 질 환 | 안 질 환 | | |
| 정 신 질 환 | 흉 부 X선 검 사 | | |
| 기 타 | | | |

위와 같이 검사했습니다.

년 월 일

검사자(담당의사)

(서명 또는 인)

| | | |
|----------------------------------|-----------------|-------|
| 검사 결과 | []합 격 | 합격 사유 |
| 합격 여부 | []판 정 보 류 | |
| 판정보류 사유 (질환명 및 재신체검사 필요 사유 등) | * 필요시 소견서 별도 첨부 |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판정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검진기관의 장

(서명 또는 인)

| | |
|------|----------|
| 유효기간 | 판정일부터 1년 |
|------|----------|

210mm × 297mm [백상지(80g/m²)]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

[응시자]

1. 응시자는 굵은 선 안에만 정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 가. ②란은 시험실시기관을 적어야 합니다.
(예: 인사혁신처, 국세청 등)
 - 나. ③란에는 응시한 직명을 적어야 합니다.
(예: 9급 세무직, 7급 전기직 등)
 - 다. ⑦란은 신체검사 후 1년 이내에 같은 직렬의 다른 시험에 응시하는 등의 사유로 다시 사용할 경우에 적어야 합니다.
2. 응시자는 굵은 선 안쪽의 사항을 모두 적은 후에 신체검사서를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과 함께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검진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 ※ 응시자는 본인 질환에 대해 별지 제2호서식의 전문의 소견서를 미리 제출할 수 있습니다.

[검진기관]

1. 응시자의 사진에는 반드시 압인(押印: 도장을 눌러 찍음) 또는 계인(결침도장)을 해야 합니다.
2. "검사 내용"란은 검사자가 검사 결과를 적고 확인해야 합니다.
 - 가. 검사 결과 기재의 예: 질병명(심부전증, 백혈병, 척수종양 등)을 적거나 "정상", "양호", "이상 없음" 등으로 적어야 합니다.
 - ※ 필수사항: 질병이 있는 경우 "합격" 또는 "불합격"과 관계없이 반드시 질병명을 적어야 합니다.
 - ※ 검진기관에서는 필요시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위해 활용하고 있는 문진표를 채용 신체검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나. 임신부나 흉부X선 검사를 받을 수 없는 특별한 건강상의 이유가 있는 응시자에 대해서는 흉부X선 검사를 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면제 사유를 흉부X선 검사 항목에 적습니다.
 - (작성 예시) 임신부인 경우 "임신으로 인해 흉부X선 검사 면제"라고 적습니다.
3. "검사 결과 합격 여부"란 등에는 신체검사를 실시한 검진기관의 장이 판정 결과 등을 해당 []안에 "√"로 표시하고 그 사유 등을 적어야 합니다.
 - ※ 응시자가 본인 질환에 대해 전문의 소견서를 미리 제출한 경우 판정에 참고합니다.
 - 가. 합격 사유 기재의 예
 -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 에 해당하지 않음
 - 0000 질환에 해당하나 000000한 이유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함
(예시: '만성골수성백혈병' 에 해당하나 글리벡 복용 후 세포유전학적 완전 관해(官解)에 도달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함)
 - 나. 판정보류 사유 기재의 예
 - 0000 질환에 대해서는 000000한 이유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할지 의심되므로 000000 분야 전문의의 재신체검사 필요 (예시: 중추신경계 염증성 질환이 있는 경우로 팔다리가 쇠약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할지 의심되므로 신경과 분야 전문의의 재신체검사가 필요함)
 - ※ 응시자의 질환이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 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판단이 곤란한 상황으로 관련 분야의 전문의가 재신체검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판정보류로 기재합니다.
4. 검사 결과에 대한 판정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별도 붙임